

제20대 대통령 선거 사법개혁 10대 과제

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

I. 법원개혁	
사법행정의 민주화	1
법조일원화 정착 및 확대	2
법관 증원	3
상고제도 개혁	4
국민참여재판 제도 개혁	5
II. 검·경 개혁	
경찰 개혁: 자치경찰제도 실질화 및 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,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	6
검찰 개혁: 수사권·기소권 분리 심화, 재정신청 확대	7
수사절차법 제정	8
공수처 강화	9
III. 정보기관 개혁	
국정원에 대한 감독·통제 강화	10

1. 사법행정의 민주화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한국 사법행정구조의 폐해
 - 한국 법원의 사법행정구조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피라미드형 관료구조
 - 법관 보직 등 인사권, 평정권 등 방대한 사법행정에 대한 총괄 권한이 대법원장 1인에 집중, 사법농단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비슷한 상황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구조임
- 법관이 독점하는 사법행정
 - 사법행정은 재판의 독립과는 달리 법관만이 수행해야 하는 독점의 영역이 아님.
 - 선진국은 행정부, 독립된 사법행정위원회 등이 사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다수
 - 한국 사법행정은 오랫동안 법관에 의해 독점됐으나, 시민의 의견이 사법행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법관들의 전횡을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를 노정함
 - 중요한 것은 법관의 독립, 재판의 독립이지, 사법행정의 독립 아님
- 법관 권력 기구이자 관료기구인 법원행정처
 - 법원행정처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기구.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는 관료화·권력화되어 사법농단의 중요한 실행자로 된 바 있음.
 -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개혁이 없는 한 법원행정처가 재판 지원 기관이 아니라 재판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거점기관으로 작동할 위험 계속 존재
- 각급법원 사법행정의 대법원장 종속
 - 각급 법원장을 대법원장이 보임함으로써, 각급 법원 사법행정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 속에 편입됨
 - 대법원장에서 법원장, 법원장에서 판사 개개인에게 이어지는 중앙집권형 사법행정구조는 법원의 관료적 체제를 강화하는 요인.
- 법관의 파견 및 심판외직 겸임업무로 인한 재판 독립 위태 우려
 - 법관의 심판외직 겸임 규정은 법관이 본연의 업무인 재판이 아니라 사법행정 관료, 비심판직 선호 현상, 발탁인사로 인한 법관 순치 등 다수의 폐해를 낳고 있음
 - 타 기관 파견 판사들의 정보 수집, 재판 정보 누출, 입법 로비 등 의혹들은 그 자체로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음

1. 사법행정의 민주화

▶ 입법 방향

-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한 사법행정
 - 합의제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
 -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 삭제
 - 사법행정위원회에 다수의 비법관 위원 참여로 사법행정의 민주적 요소 강화

-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법원사무처로의 전환
 -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 지원조직인 법원사무처로 전환
 - 법원사무처 탈판사화(현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 근거 조항 삭제)
 - 법원행정처장(현행 대법관)을 법원사무처장으로 대체하고 정무직으로 규정.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 법원사무처·차장 금지

- 법원장의 민주적 선출,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자율성 강화
 -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보하는 관료적 구조 탈피, 호선제 등 법원장 보임 방식의 민주적 개선으로 사법행정권의 지역별 분산 및 자율성 강화

- 법관의 파견 및 심판외직 겸직의 원칙적 금지
 - 법관의 타 국가기관 파견 및 법원행정처 상근 등 심판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

2. 법조일원화 정착 및 확대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법조일원화 도입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법원행정처의 법관 선발
 - 2004년 법조일원화 도입 이후에도 법원행정처 중심의 법관 선발 방식은 도제식, 관료식 법관 선호 경향을 벗어나지 못함
 - 시험과 성적 위주 선발 방식, 법조일원화에 배치되는 인사제도 운영으로 다양한 법조인들의 법관 지원 동기를 저하시킴

- 순혈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재판연구원 경력자의 법관 다수 임용
 - 순혈주의, 관료주의 등을 탈피하기 위해 도입된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재판연구원 경력자의 법관 다수 임용
 - 2021년 신임 법관 예정자 중 재판연구원 경력자 42.6%

- 대형 로펌 출신 다수 임용, 법조일원화 도입 무색, 후관예우 우려
 - 대형 로펌 출신 법조인들이 다수 법관으로 임용(2021년 신임 법관 예정자 8명 중 1명 '김앤장' 출신). 법관 다양성은 무색해지고 법조일원화가 특권 카르텔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.
 - 법관으로 지원하는 소속 변호사들을 로펌이 사전에 관리하는 등 후관예우 우려

- 지방법원, 고등법원 승진구조 및 관료화 우려 상존
 -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, 기존대로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이 '승진'으로 인식·운용될 가능성 여전히 존재

2. 법조일원화 정착 및 확대

▶ 입법 방향

○ 법관 선발 방식 개혁

- 법원행정처 주도의 시험 중심 법관 임용 방식의 전면적 개혁, 새로운 법관 선발 기준, 방식 운영 및 평가제도 도입
- 현행 법조일원화 시행 계획에 따른 착실한 실천
- 법조일원화 취지에 맞게 다양성, 공익성 중심의 법관선발기구 구성

○ 법조 일원화 성공의 제반 조건 마련

- 법조일원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, 예산 투여가 필수적
- 법관 처우 개선, 경제적 여유가 있는 변호사들 중심의 법관 임용으로 인한 법원 보수화를 막을 제도적 조건 마련 필요

○ 도제식 방식 탈피, 법관 승진구조 실질적 폐지

- 장기 경력 법조인들의 법관 지원을 주저하는 법원의 도제식 시스템 개혁 필요
- 지방법원, 고등법원 구조가 승진으로 인식, 활용되지 않도록 임용의 분리 등 제도적 정비 필요

3. 법관 증원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2019년 3,214인의 판사
 -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의하여 규정됨
 -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1963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해옴

- 최근 정채된 법관 증원
 -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증원의 속도가 상당히 둔화함.
 - 판사의 현원도 2018년 2,964명, 2019년 2,980명, 2020년 3,065명으로 정체되어 있음(연말 기준, 미보임 신임법관 포함)

- 1인당 사건 수, 독일의 5배
 - 현재 우리나라의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2019년 기준 약 464건으로 독일의 약 5.17배, 프랑스의 약 2.36배, 일본의 약 3.05배에 이르고 있음
 - 법관의 부족으로 법관의 업무가 과중해짐에 따라, 국민들이 점차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기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함

▶ 입법 방향

- 법관의 대폭 증원
 -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음
 - 법조일원화의 흐름에 발맞추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의 대폭 증원이 필수

- 매년 150명 내지 200명 증원
 - 현재의 판사 정원 3,214인을 향후 대폭 증원하여 선진국의 위상에 부합하는 재판 운영을 도모해야 함
 -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매년 150여 명 내지 200명의 증원 등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

-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 절차
 - 판사의 증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전문성, 성실성, 공익성, 다양성, 청렴성을 갖춘 법관을 임용할 수 있는 제도의 운영과 함께 진행되어야 함.
 - 판사증원과 함께 판사에 대한 처우 개선 동시 실시

4. 상고제도 개혁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13명의 대법관과 4만4천여 건의 사건 수
 - 1990.9.1.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상고 사건 수 지속 증가, 2020년 44,328건
 - 실제 심리에 참여하는 대법관 수는 13명으로 변함이 없음
 - 2018년 기준 심리불속행으로 대법원에서 심리조차 받지 못하고 끝난 민사·가사·행정 본안사건의 수는 전체 17,208건 가운데 13,818건(76.6%)에 달함

- 99.9%의 4인 소부합의, 0.1%의 전원합의체
 -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의 심리에서 전원합의체를 원칙으로 하고, 소부의 판단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(법원조직법 제7조)
 - 현실은 단서(소부합의, 99.9%)가 본문(전원합의체, 0.1%)을 압도하고 있음

- ‘서오남’ 대법관들의 다양성 부족
 - 흔히 대법관의 구성은 ‘서오남’(서울대 출신, 50대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법원장급 현직 엘리트, 남성 판사)으로 요약되어 왔음
 -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나 의문 존재.

▶ 입법 방향

- 대법관수 대폭 증원
 - 대법관의 소규모 증원으로는 유명무실해진 상고심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
 - 대법관의 대규모 증원을 법으로 명시하되, 한 대통령 임기 하에서 대규모 대법관 임명을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증원을 달성
 - 대법관 수는 최종적으로 60명 내외가 되도록 설계. 대법관 1인당 사건 수 1천건 미만
 - 판례변경을 위한 전원합의체는 민사부, 형사부, 행정부, 특허부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

-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증진
 - 단순히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하여 당연히 대법관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것은 아님
 - 공익성, 공공성, 인권지향성 등을 중요 기준으로 새로운 인물 구성
 -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심사방식을 개선하여, 대법관 추천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함

5.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혁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장식품으로 전락한 국민참여재판
 - 국민참여재판, 평균 200건에서 250건 시행, 작년 96건 시행
 - 형사공판사건 평균 250,000건의 0.1%도 되지 않는 현실
 -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면 좋고 실시하지 않으면 더욱 좋은 제도로 전락
 - 2008.1.1.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형식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
 -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. 시민들에게 친숙한 제도가 되어야

- 제도상의 한계비효율, 무용한 절차로 전락시킬 위험
 -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 부재 :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무용한 절차로 만들어버린다는 비판 존재
 -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협소,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 모호, 배심원의 권한 한계 등의 문제 내포
 -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율이 높아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다시 법관 재판을 받게 되는 비효율 문제 발생

▶ 입법 방향

- 대상사건 확대
 - 대상 사건을 모든 범죄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
 - 대상 사건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법관 수 증원,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함

- 배제 결정 사유 최소화, 구체화
 - 현행 포괄적 배제 사유('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')를 구체적인 사유로 규정할 필요
 - 배제결정 사유는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

- 평결의 기속력 부여
 -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 조항
 -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는 평결의 경우 기속력 부여할 필요 있음

5. 국민참여재판 제도 개혁

○ 배심원수 확대

- 현행 배심원수는 사형·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, 그 외의 대상 사건은 7인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으로 규정
- 배심원 숫자가 적은 경우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무게감이 높지 않음. 배심원의 수는 원칙적으로 12명으로 개정. 자백 사건은 9인으로 개정
- 배심원수를 확대함과 동시에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선고 판결 중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

○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

- 국민참여재판 홍보 확대, 배심원 여비와 일당 인상,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 등 필요

6. 경찰 개혁

— 자치경찰제도 실질화 및 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,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불안전·불충분한 자치경찰제 시행
 - 경찰 권한의 지역적 분산을 위해 자치경찰제가 시행
 - 하지만 자치경찰은 경찰의 사무 중 일부 사무만을 담당할 뿐 조직이 신설되거나 신분이 변경되지 않음.
 - 자치경찰을 관리·통제하는 기구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나, 현재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예산·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없음

-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 강화
 - 검경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이전(2024년)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은 비대해져, 경찰권에 대한 통제 및 견제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 또한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.
 -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므로, 경찰청을 통제하는 데에 한계. 이에 따라 현재 경찰청의 자문기구화된 실정임.

- 검·경수사권 조정으로 이후 경찰의 권한 증대
 - 2024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은 더욱 비대해질 것임. 이에 늘어난 경찰 권한에 비례한 외부 통제 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됨.
 - 현재 경찰 수사관의 인력 부족과 형사법 전문 지식을 갖춘 수사관의 부족으로 업무 속도가 느려지며 고소·고발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기도 함.

- 경찰의 대국민 접촉이 증가
 -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경찰의 대국민 접촉이 증가하기도 함
 - 이에 경찰의 부당한 경찰권 행사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찰권 행사를 통제한 필요성이 대두됨.
 - 경찰의 청렴성, 도덕성이 강력하게 요구됨.

6. 경찰 개혁

▶ 입법 방향

○ 경찰사무의 재분배

- 국가경찰사무 중 대테러, 외사, 전국적 수사가 필요한 중대범죄 등을 제외한 모든 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사무로 이관, 자치경찰의 조직 신설 및 국가경찰로부터 분리
- 국가경찰의 조직은 경찰이 정치적 도구화와 중앙집중화를 막기 위해 최소한으로만 유지.

○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실질화

-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예산 편성의 권한을 주어야 함.
-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.

○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성 강화

- 현재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
- 강화된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요구 시 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보고할 의무를 규정
- 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변경하여 위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, 위원의 선출 방법을 다양화하여 국가경찰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하여야 함.
- 심의·의결 대상에 '경찰청 인사안에 대한 동의권', '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및 해임건의권', '경찰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·감찰 징계 요구권', '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조치 요구권'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권한 실질화

○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구 신설

- 시민이 참여하는 외부적 경찰 상설 감시 기구 설치
-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소 100명 이상의 인원 고용
- 영국의 경찰감시기구(IOPC)를 참고하여 외부적 감시·통제 기관이 부당한 경찰 권 행사에 대한 독자적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함.

7. 검찰 개혁: 수사권·기소권 분리 심화, 재정신청 확대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검·경수사권 조정으로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 축소
 -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(6대 범죄)
 -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함으로써 인권 침해적이고, 불법적인 수사가 가능한 영역이 아직 광범위하게 존재함.
 -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보유한 범죄의 구체적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자의적인 개입 우려가 있음

-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찰 업무는 축소되었으나 조직, 인력, 예산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음
 - 줄어든 업무에 대비한 조직 진단, 인력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계획이 없음.
 - 수사, 기소 분리의 확대에 따라 검찰 조직의 인력, 예산 등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

-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 부족
 - 한국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, 기소편의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, 검찰의 기소재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.
 -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를 종국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나, 검찰의 불기소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제도만이 유일하게 기소재량을 통제하는 방법
 - 고소사건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 인정, 하지만 고발사건은 일부 범죄에 한하여 재정신청권을 인정.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 미흡.

- 미흡한 재정신청제도
 - 현재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분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인데, 이는 재정신청권자의 법원에의 제도적·물리적 접근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을 저해함
 -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가 결정된 경우 공소유지를 또다시 검찰이 담당하게 되므로, 재정신청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.

7. 검찰 개혁: 수사권·기소권 분리 심화, 재정신청 확대

▶ 입법 방향

○ 검찰 직접수사 대상 범죄 축소

- 경찰의 지방 분권, 역량 강화, 민주적 통제 등을 고려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형사소송법, 혹은 앞으로 제정하여야 할 수사절차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.
- 현행 6대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수적인지 재검토하여 축소-대형 참사범죄, 선거범죄 등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적은 범죄는 검찰청법 등에서 삭제
-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대하여 법무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규정 개정

○ 검·경수사권 조정에 맞는 인원 및 업무 재배치

- 검찰 수사 인력은 한시적 특채 방식 등을 통하여 경찰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음.
- 검찰청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혁신 추진, 법무부 역시 검찰청 축소에 따른 조직 혁신 필요

○ 재정신청의 대상 확대 및 제도 보완

-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, 검찰의 기소재량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재정신청권자의 법원에의 제도적·물리적 접근성을 담보하고,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.
-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검사가 아닌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여 재정신청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.

8. 수사절차법 제정

▶ 현황 및 문제점

○ 복잡한 수사절차

- 수사절차에 관하여 검찰·경찰·공수처 내부의 지침, 준칙 등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들조차 수사절차에 대해 세밀하게 알기 어려운 실정임.
- 시민들이 수사도중 자신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규정을 알 수 없음
- 수사과정의 밀행성, 비밀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권한이 제도 외적으로 확대
- 수사기관의 차이로 인하여 시민의 인권보호에도 차이 발생 여지 있음. 대통령령으로 규정 하면 수사기관 모두를 강제할 수 없는 한계
-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공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강제수사를 비롯한 수사단계에서의 규율이 충분하지 않음. 수사단계에서의 강제수사에 대한 규율은 대부분 법원 공판 단계에 관한 규율을 준용하는 방식으로만 되어 있을 뿐임(형사소송법 제209조 등 참조).

▶ 입법 방향

○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절차법 제정

- 수사 개시부터 형사공판단계 전까지 전반적인 수사절차 일반을 포괄하는 절차법을 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 보호.
- 특히 강제수사의 경우 국민의 인권침해가 수반될 위험이 크므로,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국의 PACE법과 같이 압수·수색, 체포·구속에 대한 요건과 절차의 세밀화.
- 수사 절차상 경찰, 검찰, 공수처 간 권한과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사기관 사이에 혼선을 방지하고, 인권 친화적인 수사절차의 확립.
- 수사절차법 제정을 계기로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

9. 공수처 강화

▶ 현황 및 문제점

○ 사건 대비 부족한 인력과 규모

-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규모는 검사 25명, 수사관 40명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, 2021. 10. 현재 그 인력을 전부 총원하지 못한 상태임. 그 외에는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, 경찰 파견 수사관 34명 등 모두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가 7,000명에 이르는 점, 2021. 6. 18. 현재 공수처 설치 후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약 1500건에 달함을 고려할 때, 현재 공수처의 규모는 제 소임을 수행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함.
- 공수처검사 및 공수처수사관 인원의 부족을 파견 검·경 수사관으로 채우고 있어서 검·경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에 제한적임.

○ 재이첩 논란

- 공수처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공수처의 위 고위공직자에 대한 '기소권'을 정하고 있을 뿐, 검찰에 대한 공수처의 '우선적 기소권'은 정하고 있지 않음.
- 재이첩 가부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논란이 됨.
- 특히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했던 사건을, 검찰이 재이첩을 거부하고 직접 기소하는 사건도 있었음.

▶ 입법 방향

○ 조직 강화

- 인력의 부족은 사건의 대규모 이첩과 이로 인한 조직의 불안정 원인이 되므로,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함.
- 공수처 도입 초반임을 고려할 때,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므로 새 정부 도입 초기에 진행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.

○ 공수처의 '우선적 기소권'

-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는 범죄의 경우,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더라도 공수처가 우선하여 공소 제기 권한을 가짐을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함.

10. 국정원에 대한 감독·통제 강화

▶ 현황 및 문제점

- 민주적 감독·통제 방안 관련 제도개혁 미흡
 -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, 활동 등에 대하여 국회와 독립적 조직에서의 상시적이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재발할 수 있음.
- 비공개적인 운영 방식
 - 정부 기관 감독 및 견제 기능을 본질로 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조차 모든 회의가 비공개이고, 피감기관인 국정원의 요구·요청에 의해 운용되는 문제가 제기됨.

▶ 입법 방향

- 독립적인 '정보감찰관' 제도 신설
 - 국정원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 대통령이 별도로 임명하여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되는 '정보감찰관' 제도 신설
 - 20대 국회에서 김병기 의원 등 85명이 발의한 국정원법전부개정법률안 제8조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임에도, 지난 전부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음.
 - 국정원의 직무감찰, 회계검사, 준법 활동 계획 등의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도록 함.
- 투명성 제고
 -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위원회로 변경하여 정보기관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좌진들의 회의 배석과 자료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정보위원들의 국정원에 대한 감시·견제 활동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.
 - 국회 정보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 국정원장의 자료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, 위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비공개하는 국회법 규정 개정.
 - 국회의 국정원 예산 등에 실질적인 통제권 확보를 위하여, 현행 국회법 제84조 제4항 개정 및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폐지